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홍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150

발의연월일: 2022. 11. 8.

발 의 자:김홍걸・김병주・김성주

김승남 • 안호영 • 위성곤

윤재갑 • 윤준병 • 이병훈

주철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한식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과 지역명소를 연계하는 관광상 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를 계기로 한식과 지역관광을 연계하는 한식관광 상품을 하나의 문화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한식과 연계된 한식관광 상품의 개발·보급·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,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위탁사업자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한식문화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한식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식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한식관광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한식과 연계된 한식관광 상품의 개발·보급·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를 지정하고,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한 식관광과 관련된 상품개발 및 국내외 홍보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u><신 설></u> 제1	12조의2(한식관광) ① 농림축산
	식품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한식 과 연계된 한식관광 상품의 개 발·보급·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를 지정하고, 해당 사업 자로 하여금 한식관광과 관련 된 상품개발 및 국내외 홍보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하여야 한다.